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동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152

발의연월일: 2022. 11. 8.

발 의 자:정동만・이종성・유경준

황보승희 · 박성민 · 이채익

강대식 · 김정재 · 구자근

김승수 · 홍석준 · 김도읍

의원(12인)

제안이유

그간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과·집행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,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,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'입주자등의 동의비율'을 완화하여 공 동주택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23조제5항)
- 나.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전체 입주 자등의 동의비율을 완화(안 제93조제2항)

법률 제 호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3조제5항 후단 중 "있으며,"를 "있는 세대 수와"로 한다. 제93조제2항 전단 중 "10분의 3"을 "10분의 2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9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23조(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 | 제23조(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 |
| 개 등) ① ~ ④ (생 략) | 개 등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|
|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 | 5 |
|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| |
| 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| |
|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| |
|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 | |
|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동주택 | |
| 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| |
| 수 <u>있으며,</u> 구체적인 공개 내역 | <u>있는 세대 수와</u> |
| •기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 | |
| 한다. | |
| 제93조(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 | 제93조(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 |
| 독) ① (생 략) | 독) ① (현행과 같음) |
|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 | ② |
| 제2호,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 | |
|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<u>10분</u> | <u>10</u> |
| <u>의 3</u>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 | 분의 2 |
| 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 | |
| 나 그 구성원, 관리주체, 관리사 | |
| 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| |
|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 | |
| 사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| |

|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| <u> </u>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 | |
|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| |
| ③ ~ ⑧ (생 략) | ③ ~ ⑧ (현행과 같음) |
| | |